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0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08일
발 의 자: 아이수루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 경, 김기덕, 김영철,
김원태, 민병주, 박강산,
유만희, 유정희, 이민옥,
이소라, 이영실, 이원형,
이종태, 이종환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「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,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, 되려 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 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, 정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실정
- 특히, 외국인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되어 있는바,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근로조건 개선,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노동자의 노동, 인권 보호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
12.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지원의 내용 및 범위) ① 외국 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7조(지원의 내용 및 범위) ① ----- ----- ---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11.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</u>	<u>11.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</u>
<u><신 설></u>	<u>12.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</u>
<u>12. · 13.</u> (생 략)	<u>13. · 14.</u> (현행 제12호 및 제13호 와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7조(지원의 내용 및 범위) 제1항 제11호의 내용을 수정(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→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)하고, 제12조를 신설(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)한 것으로, 수정 및 신설 내용이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적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